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 2019-116

제출자 7

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·선정(안 제2조·제3조)
- 나.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(안 제4조~제8조)
- 다.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(안 제9조)
- 라. 대상사업의 점검·관리 및 평가(안 제10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1,120천원 확보예정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19. 9. 9.~9. 30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반영함(별지 제1호~제3호서식 성별구분항목)

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)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고 한다)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
 - 2.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 - 3.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
 - 4.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 - 5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 - 6.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3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)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
 - 2.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

- 3.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 - 1. 정기회의: 연 1회
 - 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- 제9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(이하 "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

-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.
- 1.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: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,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
- 2.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: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대상사업의 점검·관리)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평가)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.
- 제3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

① 등록번호	② 정책명	③ 사업부서	④ 담당자
			(남/여)

<기재항목>

- ① 등록번호: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(예 20 -1, 20 -2)합니다.
- ② 정 책 명: 사업명을 적습니다.
- ③ 사업부서: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(직위)과 함께 적습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

① 정책사업명						
② 추진배경						
③ 사업개요						
④ 사업부서			⑤ 담 당 자	(남/여)		
⑥ 선정기준			⑦ 사업기간			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			
○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		'00.00.00	입안자, 검토 및 결재자,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			
○ 내용		'00.00.00	입안자, 검토 및 등의 직과 성명	결재자, 감독공무원 기재		

〈기재항목〉

- ① 정책사업명: 온-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을 적습니다.
- ② 추진배경: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습니다.
- ③ 사업개요: 사업목적,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적습니다.
- ④ 사업부서: 소속 기관명, 부서명(과 단위)을 적습니다.
- ⑤ 담당자: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(직위)과 함께 적습니다.
- ⑥ 선정기준: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- ⑦ 사업기간: 사업의 시작 및 (예상)종료 시점을 적습니다.

〈그간 주요 추진내용〉
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.
-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,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을 적습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

정책실명제 등록번호	20 -	담당부서 작성자	(부서명 / 담당명) (이름 / 사무실연락처) (남/여)
정 책 명			
사업개요	○ 추진배경:○ 추진기간:○ 총사업비:○ 주요내용-		
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			

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도 붙일 수 있습니다.